

契와 社會保障¹⁾

羅秉均

(翰林大學 社會事業學科 助教授)

차례

I. 問題의 設定

II. 本論

1. 契의 概念 및 性格規定

- (1) 契의 起源
- (2) 廣義의 契
- (3) 狹義의 契
- (4) 朝鮮後期 契組織의 社會·經濟的 背景
- (5) 契의 性格規定

2. 社會保障의 性格 規定

3. 契의 性格變化와 衰退

4. 基本原理의 側面에서 본 契와 社會保障의 関係

5. 社會保障의 保護技術的 側面에서 본 契의 組織과 運營을 論함

III. 結論：契와 自治

I 問題의 設定

오늘날 계는 서민 금융 단체로서 또는 친목 단체로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民間團體이다. 계는 우리 사회에 전승되어 온 서민단체로서 前產業社會에 있어서는 民生을 목적으로 한 단체였다.

前產業社會에 있어서의 民間의 自救策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 契의 역사가 가장 긴 것이다.

조선 500년 간의 중앙집권적 관료들은 治國의 理念으로서 民本主義, 爲民政治를 내세웠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내실이 없는 것이었다.²⁾

특히, 조선 중기부터, 다시 말해서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국가재정이 빠져나가고 집권적 통치 기능이 약화되자 민생안정의 목표로서 시행되었던 진휼 및 진대 제도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제도는 식리적 고리대적 성격을 띠는 제도로 변질해버려 진대 진휼제도에 의지하고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던 대부분의 民의 生活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른바 三政의 素亂으로 통칭할 수 있는 조선후기의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의 붕괴는 환곡제도, 조세 및 부역 제도의 변질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 三政의 素亂은 結果的으로 民生을 압박하기에 이른 것이다.

조선 중기부터 나타나 향촌 조직운동인 향약운동은 이같은 통치체제의 문란으로 빚어지는 제반 사회문제, 예컨대 民生의 문제, 사회기강의 문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다.

향약운동은 조선 말기 되었으나 전국적인 실시를 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民의 教化는 접어두고 민생 문제의 해결에는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民生問題의 해결을 중앙의 차원에서 시도한 건국 초기 중앙 관료들의 의도나, 향약운동을 통한 향촌단위의 해결을 모색하던 조선후기의 지배층의 의도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된 것이다. 결국 民은 自救策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전래의 共同體的生活方式이었던 契의 組織化를 통하여 民生問題의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³⁾

필자는 계와 사회보장을 관련시켜 보고자 본 연구에 착수하였다. 연구의 자료로는 사학 및 인접 사회과학 분야에서 발표된 수십편의 논문과 단행본들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특히 조선후반기의 契가 지니고 있었던 民生的 機能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당시의 문헌들을 참고하였다.⁴⁾

이들 자료들을 필자는 자신의 시각과 논리체계에 따라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에 관한 또 다른 하나의 이론을 정립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발표된 수많은 契理論만으로도 充分하다고 본다.

이제부터 제반 사회과학 분야의 契研究에서 시도해야 할 것은, 分野마다의 獨自的 觀點을 가지고 契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성격과 기능을 서술하고 그들이 오늘날의 사회에 시사하는 点이 무엇인가를 규명해내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본 연구는 기껏해야 기왕에 발표된 계외 연구 업적들을 계와 사회보장이란 주제를 가지

고 분석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契의 歷史는 오랜 것이며, 시대마다 性格上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契는 朝鮮後半期의 것들임을 밝힌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시켜 나갔다.

그 첫째는 조선 사회 후반기의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民生의 問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는 한국의 전통사회속에서 유행한 협동관행이 結契活動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 되었는지에 관하여 이해하고 노력하였으며, 세째는 사회보장의 보호기술적 관점에서 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방법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사회복지 사회정책 학문의 기본원리가 우리들 조상의 사회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의도하는 바는 오히려 우리의 先人들이 일상적으로 당면하던 여러 가지 사회적 욕구와 위험을 여하히 해결해 나아갔는지를 역사적 사실들의 분석을 통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이들 역사적 사실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에 시사하는 点은 무엇인지 음미하여 보려는 것이다.

필자의 능력 부족의 소치로 풍부한 史料들을 두루 분석치 못한 결과 契에 관하여 필자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주장을 충분히 立證하지 못한 점을 自認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격적인 연구논문이라기보다는 契研究를 위한 하나의 試論에 불과한 것이다.

II. 本 論

1. 契의 概念 및 性格規程

(1) 契의 起源

契에 관한 學說은 대단히 다양하며 따라서 起源에 대하여도 많은 說이 있으며, 각각 상당한 契概念上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崔南善氏는 古代村落의 集會를 그 起源으로 보는가 하면 (古代村落議會說), 다른 이는 古代村落의 宗教儀禮를 가리켜 契의 發源이라 하고, 李丙壽氏는 契를 共同勞動組織으로 보고 우리 사회의 傳來的인 두레 형태를 그 기원으로 잡는다.

(3) 협의의 契

우선, 起源과 史的 展開 過程上에 나타난 契의 概念은 村落共同體의인 要素와 組合의인 要素를 두루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으로서 이 두 가지 요소들 사이에 共同點을 찾기 힘들 정도이다. 다만 契는 會(모임)를 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意見이 일치되고 있다.

우리는 契를 朝鮮 後半期에서 찾아볼 수 있는 國家의 賑恤制度 및 鄉約의 患難相恤 規約의 유명무실화에 따른 民의 自救策으로서 보고자 한다.

한 가지 첨가할 것은 契가 지니는 組合的 原理이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契는 組合原理에 입각한 庶民團體를 지칭하고 있다.

組合은 法建的으로, 2人 이상이 공동투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약정된 사업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업목적으로서는 영리, 공익, 친목의 추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¹¹⁾ 조합은 共同目的을 가진 人的 結合體로서 집단의 연대성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만, 연대성 그 自體가 目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 구성의 기본단위는 가입자 개개인이 되며 다만 공동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제를 받는다.

조선후기 結契의 原理를 組合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이유는, 첫째 조합원이 되는 家家戶戶의 경영권이 어느정도 확립되어 있었고 相助, 殖產, 租稅, 納付 등의 共同目的의 수행을 위하여 加入者들이 金穀을 出資하고 때로는 息利事業을 전개하여 目的達成에 注力하였으며, 組職과 運營에 關한 事項이 契帖 또는 口頭形式으로 約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4) 朝鮮後期 契組織의 社會·經濟的 背景

여기서 朝鮮後期는 임진왜란 이후 末期를 의미한다. 임진왜란은 契의 成立과 直接의인 關係를 지니는 歷史的 事實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대를 한정시키게 된 이유는, 첫째로 조선시대의 대다수의 契로서 밝혀지거나 계 연구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주로 王亂 이후의 것들인 데다가 둘째로는 이미 조선중기부터 해체되기 시작한 조선의 중앙집권적 관료제도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쇠퇴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물론 영·정조 代에는 王權 및 中央集權 體制가 일시적으로 재정비되기는 하지만 朝鮮前期의 水準으로 복구되거나 더 응성해지거나 하지 못하고 종료되어 버린다.

임진왜란의 참패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촌의 폐허화로 인하여 농민의 생산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따라서 民의 생활이 급격히 빈곤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농촌의 流民, 捕亡 現象이 점증하게 된다. 전쟁의 참화에 의한 경작 면적의 감소는 조선말기까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채였다.¹²⁾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은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의 경직화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民生의 문제가 점증적으로 약화됨과는 별개로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主된 조달자는 여전히 民이었기 때문에 民의 조세 부역 및 군역의 부담은 점차 가중되었고 급기야 民의 부담 한계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民生은 초췌할대로 초췌해 갔다. 설상가상으로 鄉吏들의 民을 상대로 한 奇斂誅求의 심화는 民生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아울러, 같은 계급간의 인구이동은 民生問題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즉 한편으로 인구의 流民, 捕亡 등에 의하여 생산과 조세 부담의 主役이었던 民의 戶數가 점차 줄어 갔으며, 스스로 신분됨을 포기하여 과중한 조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7세기 移秧法의 보급 이후 새로이 보급된 농업기술에 힘입어 새로이 대두하기 시작하는 경영형 부농과 土豪들은 양반계급으로 상승하거나 또는 여타의 방법을 통하여 조세와 양역의 부담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數만큼 民이 국가의 經濟를 유지해야 했다. 따라서 民의 生活은 점차 어렵게 될 수밖에 없었다.

본고에서는 結契活動의 촉진요인으로서 조선후반기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①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해이(구체적으로 환곡제도의 문란과 鄉吏들의 奇斂誅求), ② 유교적 관습의 생활화(冠婚喪祭儀式의 強化), ③ 商工業의 발달, ④ 조세 및 양역의 공동 부담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보고 각각의 것들이 民의 自救策으로서의 契組職을 촉진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①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해이와 契

국가를 中心으로 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目的是 民을 외침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부적으로는 民生을 안정시키는 데 있었는데, 체제의 운영에 소요되는 내용은 生產의 主役을 맡았던 民으로부터 조세, 부역, 군역의 형태로 수렴되었다.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는 이상의 세 가지 국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서만 유지가 가능하였는데, 이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이미 고려시대부터 賑貸 및 賑恤 制度가 시행되었다.

우리 나라의 社還米制度는 임진왜란 以前처럼 民의 賑濟에 目的을 둔 福祉制度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 制度가 壬辰倭亂을 전환점으로 하여 그 성격과 내용이 變換되었다.¹³⁾ 즉 “외적의 침입에 당하여 國庫는 비고 軍需는 浩大하게 되자 戶曹 및 여러 衙門과 營門들이 백성의 賑濟를 위하여 설치한 倉庫의 糧穀을 봄에 貸與한 다음 가을에 還收할 때 상당한 액수의 <耗穀>을 부가 징수함으로써 이것을(國家와 官衙의) 經費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¹⁴⁾

官의 經費 조달은 이 제도의 性格을 變化시키는 첫번째 요인이 되었다.

둘째로 이 제도는 생산보다는 소비를 목적으로 한 제도였고, 국가가 할애한 元穀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감소되어 갔기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재정적 수지 균형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元穀은 자연적 요인(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과 流失(도난, 죽에 의한 피해 등등) 등으로 말미암아 점차 줄어드는 반면 民의 요구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획기적인 對策이 없이는 本然의 目的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세째로는, 이른바 관리들의 부패가 社還米制度에 끼친 영향이다. 丁茶山에 의하면 社還米制度의 운용에서 획득한 수입 중에서 ⑦국가의 경비로 보충하는 것은 1/10에 불과하고 ⑨衙門의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 2/10이며 ⑩小吏들이 不正으로 着服하는 것이 7/10에 달하였다.¹⁵⁾

元穀의 償還時 수혜자인 民이 一定率의 耗穀을 첨가하여 내야 하는 이유는 원래 元穀의 자연감소분을 소비자가 보충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인데, 이 制度가 官費 및 官吏들의 私費 염출을 위한 財源化함에 따라 民이 부담해야 하는 還穀量이 점증하게 된 것이다. 원래 1/10이던 耗穀의 비율은 4/10~5/10까지 치솟게 되었다.結果的으로 社還米制度는 福祉制度가 아니라 苛斂制度로 化하게 된 것이다.

國家의 社還米制度의 變質은 結局 춘궁기의 民生苦 및 기타 災害로 인한 民의 生活苦 問題를 鄉村團位에서 해결하도록 방치해 버리는 결과를 낳았으며 鄉村團位 解決策은 한편으로 兩班層의 主導下에 組織된 鄉約의 患難相恤과 社倉制度의 結合, 다른 한편으로는 庶民의 結契活動의 증대 현상으로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前二者는 全國的인 實施가 不可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시된 지역에 있어서도 양반들의 主導下에 실시되어, 民의 진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였던 것 같다. 따라서 契는 朝鮮後半期의 民의 民生苦 問題 解決을 위한 自救策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맡게 되었다.

②儒教的 生活樣式의 一般化와 契組織의 증가

조선 초기부터 儒教는 治國의 理念이자 社會秩序 維持를 위한 기준적 규범으로 성장하였다. 더구나 중종조 以後 양반 계층의 主導下에 전개되는 鄉約運動은 儒教的生活樣式을 民間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교는 孝를 生活의 기본 이념으로 하였고 사람이 父母의 回甲 및 死亡 時에 성대한 예식을 치루고 禮를 갖추는 일은 孝의 근본이라고 가르쳤다. 나아가서 조선의 사람들은 冠婚喪祭의 禮를 성실히 치루는 일을 一家間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일로 간주하였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개인이 속한 가문의 사회적 지위는 개인의 지위를 결정하는 변수였던 데다가 그 외 사회적 진출을 좌우하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였다.

이같은 思考方式은 조선후반기에 와서는 兩班 뿐아니라 庶民社會에서도 유행했던 것 같다. 따라서 이들 庶民들은 冠婚喪祭의 諸般儀禮를 성대히 치루기 위하여 거액의 비용을 마련해야만 하였고, 이것은 個個 戶單位의 一時的 努力만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같은 目的을 가진 사람들끼리 結契하여 비용을 염출하고자 婚喪甲契 등이 조선후반기에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③ 商工業의 發達

조선후반기 商工業 發達은 大同法의 實施 以後 가속화 됨을 알 수 있다.

大同法은 1608년(선조 41)부터 貢物을 米穀으로 고쳐 바치게 한 法으로서 효종 9년(1658)에는 경기, 강원, 충청의 三道에 실시한 데 이어 전라도 및 沿海 邑까지 실시 범위가 확대되었다. 대동법의 실시는 종전까지 각 지방의 특산물을 쓰던 왕실과 정부의 소요물자를 정부-생산자 사이의 매개상인이나 어용상인인 貢人們로 하여금 조달케 함으로써 교환경제 체제가 발달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교환경제 체제는 종전까지 어용 상공업자들이 전담하던 상품의 생산과 유통업무가 자유상공인계층 계층에게도 분담됨으로써 다양화되고 더욱 활기를 띠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韓相權氏는 임란 이후부터 18세기 중엽 場市發達의 개략적인 사항들을 살펴본 뒤, 場市開設이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시기를 숙종조 전후(18세기 초엽)로 잡고, 1730~1740년에는 場市가 전국에 걸쳐 본격적으로 발달하며 1750년대에 들어서는 場市가 市塵體系에 대립될 정도로 성장하여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해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⁶⁾

조선후기 상공업의 발달은 同業組合의 기능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商業分野에는 坐商으로서 서울의 육의전과 기타 도시의 시전이 도시지역의 商權을 쥐고 있었으며 각 지방의 鄉市들을 편력하던 複負商, 그리고 地方都市의 貨物集產地에 存在하면서 貨物의 都賣, 보관, 창고업, 위탁판매업, 화물운송업, 대부, 예금, 手形發行 등의 금융업 그리고 때로는 숙박업을 겸하는 상업기관인 客主(소규모)와 旅客이 있었으며 왕실과 관청의 소비물자를 조달하는 貢人們이 있었다.¹⁷⁾

이들 各 商人團體들을 取利를 통한 資本의 증식을 수단으로 그들 活動을 擴大시켜 나아갔다.

이들의 生活은 土地에 기반을 둔 農業從事者들의 生產樣式과 判異하게 다른 것이었다. 후자의 경우, 노동력의 투여는 가을 추수기에 一定量의 수확을 가능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生產의 主役이자 노동자인 농부들의 삶을 보장한다. 하지만 商工人들의 生活基盤은 土地가 아닌 직업활동에서 오는 이윤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生產된 財貨의 판매와 流通이 원활치 못하고서는 자신들의 生活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같은 생활보장은 한편으로는 지배권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하여 얻

어지는 獨占權 또는 商行爲上의 特權을 보장받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組合形成을 통하여 그들의 직업활동을 외부, 내부적으로 보장받지 않고서는 不可能한 것이었다. 同業組合은 商工人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한편으로는 외부(특히 官權)와 協助的인 關係維持를 위한 하나의 통로이자 내부적으로는 組合員간의 相扶相助를 통하여 同一職業 從事者들 사이의 結束力を 다지는 하나의 발판이 되었다.

組合의 形成은 商人에게 뿐만 아니라 工匠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즉, 工匠人们은 匠種力의 종류에 따라 同業團體를 組織하여 外部的으로는 獨占權을 방어하고 내부적으로는 成員들의 結束을 다져나갔다.¹⁸⁾

商工人組合은 “會”(예컨대 負裸商會) 또는 “契”的 이름으로 存在하였다.

商工人契(또는 會)는 두 가지의 큰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와의 관계형성이다. 특히 坐商組合인 廉界들과 工匠人们的 工匠契는 同業從事者들의 納稅團體로서 기능하였으며 납세의 대가로 중앙집권 체제로부터 商工業行爲의 特權을 부여받았다. 다른 하나는 長을 정점으로 하는 同業者 救濟와 相助를 통한 집단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었다.

負裸商은 이미 三國時代 내지 통일신라시대 초에 자연발생된¹⁹⁾ 行商으로서, 조선의 건국과 함께 負裸商團이 公認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조선말기까지 公权力(官權)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였다.

이들은 負裸商會라는 組合을 結成하였고 그 組織은 全國의 行商들을 통솔하는 강력한 同業組合으로서, 特異한 運營方式을 통하여 組合員들의 生業과 經濟生活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해 나갔다. 구한말에 내한한 프랑스인 샤이에롱베(Chaille-long-beg)는 負裸商會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²⁰⁾

이 단체는 자체내에서 선출한 우두머리가 이끌어 갔다. 모든 재산은 共有였고 노동에 의한 생산물은 이 단체에 마련된 금고에 불입되었다. 프랑마숑²¹⁾ 단체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은(특수한) 신호로써 식별하였으며 모든 구성원들은 그들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만약 구성원이 사망하게 되면 단체의 비용을 지출하여서 그를 매장 하였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들로부터 약간의 稅를 거두었다.²²⁾

“負商 상호간의 협동정신은 요약하면「病則 救之」하고 (...)「病救死葬」함을 신조로 삼았던 것이다.” 상부상조는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에게까지도 시행되었다. 예컨대 고향에 남겨둔 구성원 가족에 우환이 생겼다든지 父母의 喪을 당하면 그 부근에서 活動하던 負裸商들이 도왔다 한다. 가족을 떠나 客地로 떠돌아 다니

면서 장사하는 이들 행상인들에게는 항상 身上의 여러 위험이 따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가족의 生活安定이 큰 문제였을 것이다. 따라서 組合的 性格의 단체를 구성하여 상부상조하는 것은 이같은 위험을 集團的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이들의 규약은 극히 엄격하였던 것 같고, 구성원 사이의 相互救濟는 가정 중요한 것으로서, 만약 이를 통보받고도 계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으면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엄격히 다스려졌다.²³⁾

이 밖에도 客主들은 客主會(또는 客主契)라는 同業組合을 가지고 있었으며 特權 商人們로 구성된 六矣塵契는 경로금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집회의 회식비에 소비하였다 전한다.²⁴⁾

조선후기 商工人들의 契는 組識과 運營이 非科學的이었던 데다가 資本의 규모에 있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契는 그들의 經濟生活上의 위험을 防止하고 契員들의 生業을 保障하는 團體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

④ 조세 및 양역의 공동 부담

朝鮮의 牧取體制는 '戶'를 단위로 하는 것이었으며 과세 및 요역 행정에 엄밀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적제도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戶단위 과세 또는 요역은 制度運營의 편의상 종종 洞, 里 등 自然部落 단위로 책정되는 것이 一船的 이었다. 부락단위 운영 관리는 한편으로는 조세 및 부역·군역 행정상의 간편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였지만, 그 이상의 社會經濟的 意味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임란 이후 토지가 황폐해지고 따라서 生產量은 현격히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中央政府의 조세 및 부역, 군역 등의 요구는 줄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中央政府의 요구에 견딜 수 없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거처없이 全國을 유랑하고 다녔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세금탕을 피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살길을 모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컨대 신분의 상승 또는 하장을 통한 方法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朝鮮이 조세 및 요역을 부담하던 庶民(常人)들의 수는 점차 줄어들어, 마침내는 個個人이 몇 사람 뜻을 부담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洪啓禧는 「均役事實冊」에서 "조선후기 民生의 狀態를 10만여 호를 가지고 50만의 양역을 당해야 했다"고 솔직하고 있고,²⁵⁾ 丁若鏞은 「牧民心書」서 조세 및 양역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당시 地方官衙들이 사용하던 변칙적인 징수방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²⁶⁾

조선후기 사회에 만연되다시피 하였던 奇斂誅求에 맞서 民은 生活苦 問題解決을 위한 自救策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官으로부터 요구되는 조세와 요역의 양은 家家戶戶의 個別的인 노력만 가지고는 解決할 수 없을 만큼 커던 것 같다. 따라서 이들은 自然部落 團位로 契를 組識하여 契의 收益金으로 納稅에 充當하였으며 그 방

이고 둘째는 概念(또는 基本原理)으로서의 사회보장이다.

制度로서의 사회보장은 社會의 산업화 以後 노동자 및 빈곤계층의 經濟生活 保護를 위하여 조직된 것이므로 그 기원을 사회의 산업화 또는 자본과 노동이 분리되기 시작한 시대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은 조선 후반기의 契와 社會保障의 연관성을 찾아보는데 있으므로 후자의 개념을 논하는데 있어서 基本原理的인 측면을 언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一般的으로 서구의 사회보장의 基本原理는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 첫째는 부조(assistance)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재해예견적 조치(Prévoyance)의 원리이다.²⁹⁾

扶助는 혈연, 지연 등의 개념에 기초하여 실시되던 원시 공동체 사회의 상부상조에서부터 중세 기독교 이념에 기초하여 실시되던 종교적 자선으로, 이어서 王權 및 公權力의 진흥에 따라 강조되기 시작한 社會秩序 維持策으로서의 救貧制渡 또는 救貧法의 개념으로 진화하였다. 이어서 扶助는 現代에 들어와서, 人權으로서 生存權의 이념에 기초한 공적부조 사회부조 등의 개념으로 전개된 것이다.

扶助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부조의 수급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대상자의 빈곤한 상태가 전부이다. 대상자의 빈곤 예방을 위한 노력의 유무는 扶助의 습률 결정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扶助는 公權力에 의하여 組織되기 시작한 아래 줄곧 社會秩序의 維持라는 지배층의 의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오늘날에 와서 인간존엄성의 개념이 중요시되고 그 구체적인 보장 방법으로서 빈곤자의 공적부조 수급의 원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빈곤계층에 대한 최저생계 보장의 의무 등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피부조권은 여전히 완전한 권리로 인식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노동자들의 對策은 첫째로 資本家集團에 맞서 스스로의 노동의 권리(적절한 수준의 임금, 노동조건, 근무시간 등)를 얻어 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한 노동조합과 각종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불구, 사망 등)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공제조합 (société de secours mutuels 또는 Friendly Society)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공제조합은 동일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가입과 동시에 정규적으로 일정 금액을 거두어 모아진 금액으로 질병, 노령 등의 규정된 사회적 위험이 실현된 가입자와 가족을 구제하는 데 쓰였다.

공제조합의 기본원리는 우선 집단의 연대성에 기초한 보호의 방법이란 점에서 저

축과 다르며,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自救策이었다는 점에서 있는 자 또는 公權力에 의하여 실시되어온 扶助와 구별되는 것이다. 공제조합의 규정에 약정된 급여는 公的 私的 扶助機構의 급여와 그 성격상 차이를 보인다. 즉 後者의 경우, 紿與는 가진 자의 一方的 施惠의 성격을 띠는 것이지만, 前者의 紿與는 조합원의 권리이며, 이 권리는 組合에 대한 의무의 移行(즉 加入과 會費의 납부)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組合과 組合員의 관계는 扶助의 경우처럼 가진 자와 빈곤자의 차등적 관계가 아니고, 쌍방간의 의무, 권리의 개념에 기초하여 맺어지는 계약적 관계이자 평등한 관계이다.

공제조합의 원리는 보상적 원리(idée indemnitaire)에 기초한 것으로서³⁰⁾보상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짐단적 재해예견적 조치로서는 私保險, 共濟保險, 使用者金庫, 社會保險을 예로 들 수 있다.

國家의 主導하에 시행되기 시작한 20세기의 사회보장은, 最低生活의 保障과 經濟的生活安定의 保障의 두 가지 目標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資本主義 經濟體制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의 社會保障은 국민 개개인의 의무(사회보장세 또는 기여금 납부)와 권리(사회보장 또는 사회보험의 紿與를 받을 권리) 사이의 因果的 關係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부조 또는 공적부조는 원칙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自助的 努力(노동과 재해예견적 노력)과는 무관하며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經濟的인 基本欲求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만 보조적으로 개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처럼 사회보장은 국가제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조작 및 운영의 기본 원리는 국가 또는 사회가 개인 또는 가족의 기본 욕구 해결을 우선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보다는 이들 개인 또는 가족의 자조적인 노력에 대한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同業組合 또는 共濟組合의 自律的 組織과 運營原理는 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를 표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전 국민 또는 사회보험 가입대상자들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의무와 기여의 의무를 법으로 정하여 놓고 있는데 이는 대상자들의 自助的 努力を 강화시켜서 사회 보장의 두 가지 목표 즉, 국민 또는 대상자들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경제적 생활안정의 보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토록 하는 한편, 사회보장의 재정적 균형 다시 말해서 지출과 급여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동원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사회보장은 自治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民生制度라 규정할 수 있다.

3. 契의 性格變化와 衰退

일본의 침략에 따른 한반도의 日帝殖民地化는 契의 性格變化를 초래한 日本의 한

契의 組織과 運營上에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 현상은 눈에 띠지 않는다. 그 증거로서 대부분의 계에 있어서 각출(투자)수준은 계원의 재산 상태와 무관하게 동일 수준으로 결정되며 혜택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자와 부자 간의 수직적 소득 재분배 현상은 契에서 찾아볼 수 없다.

반면 契는 소득의 수평적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예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契員은 여타 契員들로부터 각출한 金穀으로 救濟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의 소득의 수평적 재분배라 함은 契員間의 소득재분배로서 이는 다시 말해서 소득이 일반 계원들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계원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말한다.

契員 個個人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위험이 실현된 경우)一時에 소요되는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契의 紙與로 해결하고 이것을 오랜 기간 동안에 分할상환(契金穀의 定期的 分納)하였다. 그러므로 契는 契員 個個人單位의 所得을 時間的으로 再分配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5. 社會保障의 保護技術的 則面에서 契의 組織과 運營을 論함

(1) 契의 組織과 運營

朝鮮의 契가 지니는 社會經濟史的 意味는 當時의 民이 日常生活에서 當面해야만 하였던 各種 生活上의 위협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契는 自然部落의 自治와 協同的 慣行에 基礎하여 天災之變, 官의 苛斂誅救 그리고 冠婚喪祭 등으로 인한 經濟的 負擔을 集團的으로 解決하고자 民이 組織한 것이다.

契는 血緣, 地緣, 또는 機能的 連帶性에 基礎하고 있는데 契의 目的에 따라 連帶性의 범위와 種類는 多樣하다. 朝鮮의 契中 大宗을 이루고 있는 洞契와 共濟的目的의 契는 地緣에 基礎한 것이지만 結契 單位가 自然部落이라는 지리적 범위로 限정되는 데다가 이 自然部落中에서 氏族部落의 性格을 띠는 集團이 섞여 있었으므로 이들 契中에는 地緣的 性格과 血緣的 性格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들도 있다.

機能的 連帶性이라 함은 血連, 地緣 등과는 關係없이 同一職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같은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 간에 작용하는 연대성을 의미한다. 商工人契, 兩班契 등을 각각 同一職業 從事者들, 同一身分에 속하는 사람들 간의 연대성에 기초한 것들이며 이들 契는 自然部落의 地緣的範圍를 초월하며, 이들을 우리는 機能的 連帶性에 基礎한 契들로 분류할 수 있다.

結契의 單位는 數人에서 數百人까지 일정치 않으며 加入은 義務的인 것과 任意的인 것이 있다. 加入이 義務的인 것은 洞契, 松契 등으로서, 이들은 一定 地域範圍居住人們의 加入을 義務化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地緣에 기초한 契는 對象者

의 意思에 따라 加入이 결정된다.

張東變氏는 조선후기의 契帖 83種을 기초로 이들에 나타난 組織과 運營의 原則을 分析해 놓았다.

一般的인 契 組織 및 運營의 原則을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① 組織方法 : 一定地 또는 同一職業 從事者들이 共同出資하여 조성된 공동재산과 이익금으로 약정된 사업을 수행함.

② 出資方法 : 금전, 곡류 또는 노동력 등을 정규적 혹은 수시로 납부함.

③ 加入의 範圍 및 方法 : 대다수의 계는 同一地域 居住者들 또는 同一職業 從事者들을 對象으로 하여 契의 目的과 性格에 따라 加入의 方法이 결정됨.

④ 財產 : 대다수의 契는 財產을 所有함. 契財產의 形態는 基金, 田畠 등 다양하며 基金의 경우에는 殖利하여 田畠은 共同耕作하여 이들로부터의 利益金 또는 產物로서 契의 目的達成을 위한 產業에 用.

⑤ 機構 : 契의 규모에 따라 구성이 다양하나 대개 經營陣(驛員)과 總會로 나누어 짐.

經營陣은 契組織의 代表部로서 (契長 또는 尊位) 1人과, 執行部로서 有司(都家, 執綱) 一人 또는 數人으로 구성되며 有司 아래에는 금전 출납 및 회계사무를 맡은 色掌(掌財, 掌貨, 所任)을 둠. 契長과 有司는 명예직으로서, 契長의 경우 임기는 1년이며 契員 中 年長者, 有德者, 資產이 있는 者가 互選의 方法으로 선정됨. 有司와 色掌은 약간의 報酬를 사례금으로 받음.

총회는 매년 1회 또는 2회, 봄 또는 추수기에 정기적으로 열림. 총회 의결사항은 役員의 선출, 契의 課業 決定, 規約의 財定, 契員의 承認, 違規者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것임.

(2) 契 運營上에 나타난 特性

① 民主的 方式의 運營 : 結契의 주체는 庶民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加入의 기회는 自然部落 單位의 契의 경우, 部落住民 全體에게 開放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役員은 契員들이 직접 선출하며, 중요한 총회의 결사항은 契員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平等主義 方式에 運營 : 班上의 區別을 두는 鄉約契와 一部의 洞契를 제외한 대부분 契의 경우 酿出과 紿與는 平等主義 原則을 기반으로 施行된다. 그 代表의 例로서 相助契, 婚喪甲契 類를 들 수 있겠는데 각출 (또는 出資) 金穀의 할당량은 契員들 各戶의 재산 수준에는 무관하게同一한 水準으로 策定되는 것이 一般的인 例이며 紿與의 경우에 있어서도同一하다. 각출 방법으로서는 정기적인 것보다

는 일시적인 것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필요량을 각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력 추렴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共有田畠의 경우에 있어서는 共同目的을 수행한 以後의 잉여 생산물 배당은 契員이 투자한 노동력의 양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③ 多樣한 加入方法 : 相助契와 婚喪甲契 등은 일반적으로 里·洞 등을 單位로 組織되는데 利害關係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任意的으로 加入할 뿐 強制性을 띠지 않는다. 그러나 同業組合的性格을 띠는 負裸商會, 貢人契, 廉契 등의 경우에는 加入이 의무적이며 契員의 患難相救活動이나 吉凶事扶助活動은 契規約에 정한대로 議務의인 성격을 띤다.

④ 질병장애(불구) 등에 대한 對策不在 : 未來의 위험(災害, 災難 또는 吉凶事)을 치를 때 契員들이 한몫에 부담해야만 하는 과중한 支出)에 대한豫見的 對應策으로서 契를 본다면, 이것은 生活에 常存하는 위험이랄 수 있는 질병과 장애(불구) 등에 대한 對策도 마련했음 직하다. 그런데 필자가 조사한 한도 내에서 이들 두 가지 위험에 대비한 契는 존재하지 않았다. 추측컨데 의료기술과 의학지식이 진보되지 않았던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은 질병과 장애 및 환자와 장애자의 生活苦 따위를 숙명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 같다.

⑤ 冠婚喪祭 비용의 염출을 목적으로 한 契의 流行 : 組合的性格을 띤 契들 중에서 冠婚喪祭 時의 共濟를 목적으로 한 契가 大宗을 이루는 사실은 朝鮮社會에 있어서 이들 儀禮가 生活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으며 이들로 인한 家家戶戶의 經濟的負擔도 큰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婚喪甲契와 吉凶契는 이들 儀禮에 所要되는 비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一時的 또는 定期的 각출(또는 출자)과 契員들 간의 分擔方式을 통하여 解決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大事에 所要되는 과중한 經濟的 支出을 時間의 危險分散方式으로 解決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結論 : 契와 自治

契가 표방하고 있는 기본이념은 自治精神으로 짐작할 수 있다.

自然部落 單位의 契는 部落自治 理念에 기초한 것이다. 朝鮮 建國以來 강력한 中央集權의 統治體制가 民의 生活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나 그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 이었던 것 같다. 時間이 경과함에 따라 契의 地方自治 精神이 弱化된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 朝鮮後期의 自然部落 내부에서 契는 여전히 견고한 共同體의 生活集團으로 존재해 온 듯하다. 같은 기간 동안 自然部落은 국가와 관리들의 苛斂誅救에 部

契와 社會保障

落構成員들은 연대성을 수단으로 하여 대응하였고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으로서 軍布契와 戶布契를 例示할 수 있다.

朝鮮後期의 商工人들은 지배층에 대하여 依存的인 관계를 지속해 나아가면서 同業者 集團의 結契를 통하여 自治의 基盤을 다져나갔다.

식민지화와 자본주의의 성숙은 自治理念에 기초한 이들 민생조직의 기능을 쇠퇴,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契 기능의 쇠퇴, 약화는 結果的으로 家族과 個人을 나약한 개체로 전락시켰으며, 이들로 하여금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새로운 組織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經濟·社會의 모든 分野에 있어서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國家權力은 國家의 家計에 對한 개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結果的으로 家計를 점차 國家依存의 個體로 전락시키고 있다. 국가신성론에 입각한 現代의 福祉國家 理念은 바로 이렇게 나약해진 家計를 국가 주도의 公的扶助나 社會保障制度로 보호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國家主導的 社會保障制度의 擴充은 家族構成員의 生活安全保障에 있어서 국가가 맡는 영역을 확충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組合自治, 地域自治의 機能을 약화시키는 結果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契組織이 유지, 발전하였더라면 家計와 國家間의 中間某體로서 家族과 個個人의 經濟生活의 원충기능을 맡는 自治組織으로 성장하였을 것이다.

社會保障의 一次的 目標가 대상자들의 經濟生活의 安全을 保障하는데 있고, 이 제도가 진정한 福祉制度로 되려면, 自治理念에 기초하여 組織運營되어야 할 것이다.

社會保障 開發計劃 및 社會保障 管利運營의 效率性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自治에 관한 논의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은 오늘날의 경향에 비추어 民生 目的의 自治組織으로서 契에 關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契에 관한 論文 및 文獻 目錄——

(1) 연 구 논 문

강만길, 조선후기 수공업자와 상인의 관계, 아시아 연구 23권, 1966.

高承濟, 韓國村落社會의 協同慣行(韓國學入門, 학술원, 1983).

金炅一, 朝鮮末에서 日帝下의 農村社會의 「洞契」에 關한 研究, 韓國學報 제35집 (1984, 여름), 一志社.

金柄夏, 契의 史的 고찰(경상학보 제7집, 중앙대 경상학회, 1958).

- 金柄夏, 褒貶商에 關한 考察, 經濟學論集 3권 1호, 1959, 中央大 경제학연구회, 서울, p. 15.
- 金柄夏, 褒貶商關係史料에 대하여, 韓國經濟史文獻資料 2輯 1971. 10. 경희대 한국경제사 연구소, 서울, p. 21.
- 金三守, 契의 諸學說의 意未와 團體 개념에 관한 연구(아세아 여성연구 1권, 숙대 아세아 여성문제연구소, 1962).
- 金三守, 한국 봉건사회 경제사에 있어서의 契의 意義와 그 기능 (경제학 연구 제8집, 한국경제학회, 1960).
- 金三守, 契의 團體개념에 關한 사적 고찰 (경제학 연구 제10집, 한국경제학회, 1962).
- 金三守, 한국사회경제사에 있어서의 契의 成立(대구대학 논문집 제2집 대구대학, 1962).
- 金三守, 契에 關한 연구—그 過去와 現在(대구대학 논문집 제3집 대구대학, 1962).
- 金三守, 相扶相助의 기구—계, 사채, 보험(한국현대사 (7), 서울, 신구문화사, 1971).
- 金三守, 契연구의 제문제(韓誌 The Han No. 11, 東京, 한국연구원, 1972).
- 金三守, 契의 소멸론 (숙대논문집 제12집, 서울, 숙명여대, 1973).
- 金三守, 개항 전후기에 있어서의 契 공동체의 변화(1) (숙대논문집 제17집, 서울, 숙명여대, 1977).
- 金三守, 개항 전후기에 있어서의 契 공동체의 변화(2) (숙대 정경대 논문집 제6집, 숙대정경대, 1977).
- 金三守, 한국의 봉건 토지 국유론 비판 — 서설 (숙대학보 제3집, 서울, 숙명여대, 1963).
- 金三守, 한국의 봉건토지 국유론 비판 — 그 제도적 관련에 있어서의 井田制 및 均田制의 吟味(숙대 경상 학보 제1집, 숙명여대, 1963).
- 金三守, 實의 前期的 자본 기능에 관한 종교사회학적 연구(아세아 학보 제1집, 1965).
- 金容燮, 還穀制의 調正과 社會法, 東方學志.
- 金容燮, 朝鮮後期 軍役制의 動搖와 軍役田.
- 金仁杰, 18, 9 세기 身分制 동요와 鄉村社會 지배층의 동향, 忠青道 木川縣 事例, 서울大 碩士學位 論文, 1978.
- 金仁杰, 조선후기 鄉村社會統制策의 위기—洞契의 성격변화를 中心으로, 震檀學報, 제58집.

- 金宅奎, 한국농경 歲時의 研究, 영남대 出版部.
- 김필동, 契연구의 성과와 반성, 재정향—契 의 사회사적 연구를 위하여—서울大 社會學報(?)
- 東岩生, 조선제의 사회사적 고찰(동방평론, 동방평론사, 서울, 1932).
- 麻生武龜, 朝鮮時代의 倉庫와 社會政策, 朝鮮學報 1집, 1930, 朝鮮學會, 天理大.
- 朴元善, 韓國客主의 類型, 朝鮮學報 52집, 朝鮮學會 天理大, 1969. p. 34.
- 白南雲, 朝鮮契의 사회사적 고찰(學海, 학해사, 1940).
- 四方博, 이조시대에 있어서의 契規約의 연구(조사월보 제15권 7집, 조선총독부, 1944).
- 慎鑄慶, 丁若鑄의 還上制度改革思想—茶山의 福祉觀의 一斷面.
- 安輝濬, 韓國의 文人契會와 契會圖(韓相福편, 한국인과 한국문화, 서울, 심설당, 1982).
- 유교성, 이조시대 契의 연구(업적보고서, 동화문화연구회, 1965).
- 劉元東, 韓國의 商人精神에 관한 研究, 사단법인 한국소매업협회, 1984.
- 李覺鐘, 契에 관한 조사(조선민정자료, 조선총독부, 1923), 契に開する調査, 朝鮮, 1923, 7월호.
- 이경숙, 우리나라 契의 歷史와 現況(한국학 연구 제2집; 학생연구보고, 충북대, 1982).
- 이경우, 契의 史的 考察 (制海 통권11호, 진해, 해사, 1957).
- 李奎俸, 契의 원리와 契金利에 관한 연구(서울대 논문집, 서울대, 1972).
- 이병동, 농촌제의 기능에 관한 조사연구(농림과학 논문집 제4집, 동국대, 1971).
- 李丙燾, 古代南堂考(서울대 논문집 제1집, 서울대, 1954).
- 李之浩, 全南 康津에 남긴 恭信契節目考—청다산 유고 연구 제1집, 호남문화연구 제1집, 1963, 12, 全南大, 광주, p. 8.
- 李貞壬, 韓國社會와 契(정경논총 제5집, 숙명여대 정경대학 학생회, 1970).
- 李載昌, 朝鮮時代僧侶用契의 研究, 불교학보 제13집, 1976, 11, 동국대 불교 문화 연구소.
- 李鴻旭, 契의 法律的 性格 (경북대 논문집, 경북대).
- 張東燮, 前近代社會에 있어서 庶民協同體로서의 '契'에 關한 연구—特히 李朝時代를 中心으로—(논문집 제15집, 전남대, 1969).
- 趙建相, 竹林甲契放(호서 문화연구 제2집, 충북대 호서문화 연구소, 1982).
- 조무호, 한국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역사학적 고찰, 1982, 석사학위 논문.
- 진성기, 제주도민의 생활과 契(문화인류학 제7집, 1975).

- 9) Bishop, "Korea and her neighbou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vicissitudes and position of the country", *Ency. of Britanica*, London, popular ed., 1905, p. 272.
- 10) 李時裁, “韓國傳統社會” 社會的再生產機構の研究, 東京大 社會學博士學立論文, 1983, p. 199. 그는 契를 “村落社會의 共同組織으로 共同의 目的을 실현하기 위하여 金穀을 모아 息利活動을 하는 組織體”라 定義함.
- 11) 法律學辭典(法文社刊)의 ‘組合’項目 參照.
- 12) 임란 이후 경작 면적의 추이에 관해서는 진단학회刊, 한국사 조세 후기편, 을유문화사, p.294의 도표 “李朝歷代 田結數” 參照.
- 13) 신용하, “丁若鏞의 還上制度改革思想(茶山의 福祉觀의 一斷面),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第3券 2號, p.210.
- 14) Ibid., p. 210.
- 15) 「牧民心書」, 〈戶典六條〉第3條「穀薄」, Ibid., p. 211.
- 16) 韓相權, “18세기말-19세기초 場市發達에 關한 기초연구”, 「한국사론」7권, p. 180.
- 17) 한국소매업협회刊, 「한국의 상인정신에 관한 연구」, 1984, pp. 9-28.
- 18) 韓國誌에 나타난 바를 보면 「한국의 職工은 단독으로 종사치 아니하고 조합을 조직하여 그 長을 두고 이에 特權을 줌을 常例로 한다. 陶器, 木工, 棺匠, 石工, 獵師 等의 組合이 있어서 정부에 상납하고 또 직공구제 等의 일을 처리한다.
- 19) 朴元善, 「負祿商」, 韓國研究院, 1965, p. 57.
- 20) Chaille-long-bey, La Corée ou Chosun, p. 44; 猶谷, op. cit, p. 209에서 재인용.
- 21) 프랑마숑(Franc-masson)은 프랑스 절대왕정 시대에 조직된 미쟁이, 건축 기능공들의 공동체적 단체로서 구성원들 간에 취업을 알선하고, 여행시에는 숙식을 제공하는 등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프랑스 혁명 이후 발전되는 대규모 자본에 맞서 그들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투쟁하였다. 19세기는 집회, 결사들이 금지되어 이들의 활동은 체제지향적인 지하운동화 하였다.
- 22) 劉元東, 「경제구조」2, 상업편, 국사편찬위원회刊; 「韓國史」10, 조선양반 관료국가의 사회구조, p. 302.
- 23) Ibid., p. 304의 註34) 參照.
- 24) 猶谷, op. cit., p. 110.
- 25) 車文燮, 均役法의 實施, 국사편찬위원회刊, 「한국사론」13, “조선 양반사회

契와 社會保障

- 의 변화”, p. 222.
- 26) 具體的으로는 죽은 사람과 어린아이에게 부과하는 納稅方法(白骨徵布 墓黃口僉丁) 이웃과 同族에게 과하는 方法(隣徵 및 族徵) 등을 말한다. (丁若鏞, 「牧民心書」)
- 27) 後述할 〈계의 성격변화〉 항목 參照.
- 28) 조선총독부, 민정조사자료, 「조사자료」 제17집, 1926, 朝鮮の ‘契’, p. 57, 27.
- 29) 사회보장의 두 가지 원리에 관해서는 羅秉均, “불란서의 사회보장과 사회부조, 상반적 기원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사업학회 간, 「사회사업학회지」 제5호, 1984, pp. 44~45 참조.
- 30) Elie Alfandari, *Aide Sociale, Action Sociale*, Paris, Précis Dalle, 1978, p. 90.
- 31) 張東燮, “前近代社會에 있어서 庶民協同體로서의 ‘契’에 관한 研究, 特히 朝鮮時代를 中心으로”, 「全南大 論文集」 15, 1969, pp. 22~39.